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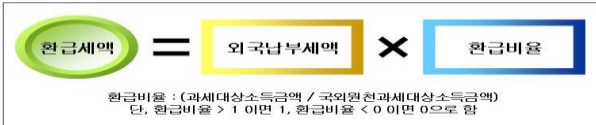
□ 변경 대비표

효력발생일 : 2025년 08월 14일

신한디딤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5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른 고유 재산 투자 - 투자주체 : 신한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억원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등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서 허용하는 의무투자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 절차 등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제5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제1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투자 - 해당사항 없음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생략>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그림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